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6-1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9. 3.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개정 및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관련법규 용어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최소한 존치 또는 폐지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관련법규 명칭 변경
 - 도소매업진흥법 폐지에 따른 관련법규 명칭 변경 : 유통산업발전법
-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폐지
 - 정기시장 개설자의 책무(조례 제5조)
 -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(조례 제6조 및 제15조))

3. 관계법령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
- 행정규제 정비지침

별지 1.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3. 관련법규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도소매업진흥법”을 “유통산업발전법”으로 한다.

제2조(정기시장의 시설기준등) 본문중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다음과 같다”로 하고. 제2항 팔호내의 “화장실, 오물수거장등”을 “화장실등”으로 한다

제5조(책 무)를 삭제한다.

제6조(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등)를 삭제한다.

“제7조”를 “제5조”로, “제8조”를 “제6조”로, “제9조”를 “제7조”로, “제10조”를 “제8조”로, “제11조”를 “제9조”로, “제12조”를 “제10조”로, “제13조”를 “제11조”로, “제14조”를 “제12조”로, “제15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하며 제1항중 “시장, 정기시장관리인,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는”을 “시장 또는 정기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”으로 하고, “제16조”를 “제14조”로, “제17조”를 “제15조”로, “제18조”를 “제16조”로, “제19조”를 “제17조”로, “제20조”를 “제18조”로, “제21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소매업진흥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유통산업발전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
제2조(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)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호와 같다.	제2조(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등)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호와 같다.
①(생략) ②급수시설, 배수시설, 위생시설(<u>화장실, 오물수거장</u>) 기타 필요한	①(현행과 같음) ②급수시설, 배수시설, 위생시설(<u>화장실등</u>) 기타 필요한
제3조 및 제4조(생 략)	제3조 및 제4조(현행과 같음)
제5조(책무) ①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그 관리인은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1.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명랑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.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 3.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의 실시 4.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. 입주상인의 공동사업의 추진 6.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의 수해 ②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시장인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 (삭 제)
제6조(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등)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 (삭 제)
1.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	

2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

3.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
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
때에는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
되며

2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
정 받은 때

3.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 된 때

(삭 제)

제7조(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)

제8조(사용허가)

제9조(사용자의 관리의무)

제10조(사용자의 신고)

제11조(사용권의 양도금지)

제12조(손해배상 등)

제13조(허가의 취소 등)

제14조(보험가입)

제15조(사용료 징수) ① 시장, 정기시장관리인, 계
절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
로부터 그 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"별표1"에
의거 징수 한다

② ~③(생략)

제16조(사용료의 납기)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

제18조(사용료의 환급)

제19조(가산금과 증가산금)

제20조(준용규정)

제21조(규칙)

제5조(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)

제6조(사용허가)

제7조(사용자의 관리의무)

제8조(사용자의 신고)

제9조(사용권의 양도금지)

제10조(손해배상 등)

제11조(허가의 취소 등)

제12조(보험가입)

제13조(사용료 징수) ① 시장 또는 정기시장관리인
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
대지 및 시설의 사용료를 "별표1"에 의거 징수
한다

② ~③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용료의 납기)

제15조(사용료의 감면)

제16조(사용료의 환급)

제17조(가산금과 증가산금)

제18조(준용규정)

제19조(규칙)

法	施 行 令	施 行 規 則
<p>③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④市·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.</p>	<p>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산정기준)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.</p> <p>②시·도지사는 영업의 규모·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
<p>第2節 定期市場 등</p> <p>第16條(定期市場등의 開設等) ①定期市場 및 臨時市場은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(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開設한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市場 및 臨時市場의 開設方法·施設基準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市·郡 또는 區(自治區를 말한다)의 條例로 정한다.</p>		